2024년도 제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 1. 일 자 2024년 2월 8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신 성 환 위 원

장 용 성 위 원

유 상 대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종 렬 부총재보

김 웅 부총재보 채 병 득 부총재보

이 재 원 경제연구원장 이 지 호 조사국장

장 정 수 금융안정국장 최 창 호 통화정책국장

박 종 우 금융시장국장 김 근 영 발권국장

오 금 화 국제국장 권 민 수 외자운용원장

최 용 훈 금융통화위원회실장 허 현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6호 - 「발권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1호, 제49조, 제53조, 제53조의3에 따라 기념화폐 발행시 발행주제 선정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화폐도안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발권규정」 개정 내용과 함께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관련부서는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기념화폐 도안뿐만 아니라 발행주제도 포함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명칭을 「화폐발행 자문위원회」로 변경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화폐발행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한 편, 기존의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 조항은 삭제한다는 개정 내용을 설명하였음.

다음으로 1월 17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들은 「화폐발행 자문위원회」 확대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기념주화 발행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실무협의가 추가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법」에 따라 기념주화 발행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념주화 발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정보공유 등 기획재정부와의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발권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발권규정」개정(안)(생략)